

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,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27일

인 사 혁 신 처 장

1. 시험일시 : 2026. 4. 4. (토), (오전) 10:00 ~ 11:50 (110분)

2. 지역별 시험장소 :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장 확인

구분	시험장	비고 (세부지역)	구분	시험장	비고 (세부지역)
서울	42개	-	경기(남부)	22개	군포, 부천, 성남, 수원, 안양, 용인, 의왕, 평택, 하남, 화성
부산	21개	-	경기(북부)	6개	고양, 구리, 남양주, 의정부
대구	18개	-	충남	5개	아산
인천	14개	-	충북	6개	청주
광주	14개	-	전북	11개	김제, 완주, 익산, 전주, 정읍
대전	9개	-	전남(동부)	3개	순천
울산	5개	-	전남(서부)	3개	목포
세종	2개	-	경북	6개	구미
강원(동부)	2개	강릉	경남	14개	김해, 창원
강원(서부)	4개	춘천	제주	2개	제주

가. 응시자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은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으니,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응시표 출력방법: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[gongmuwon.gosi.kr]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현황 → 원서제출 내역 → 응시표 출력

나. 장애인,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붙임 [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응시요령 안내]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- 가. 시험 당일 **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** 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- 나. 시험 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- 다. **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**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. (**시험장 주변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**)
- 라.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**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마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**(실물)신분증을 소지**해야 합니다.
- 응시표 출력방법: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[gongmuwon.gosi.kr]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현황 → 원서제출 내역 → 응시표 출력
 - 신분증 : **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**
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**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**입니다.
- ※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중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**실물 신분증**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**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**하여야 하며, **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**하는 모든 문제(득점 불인정 등)는 **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**하시기 바랍니다.
- 사. 시험시간 중 **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**(휴대전화, 태블릿 PC, 노트북, 스마트워치 및 밴드, 스마트안경, 이어폰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를 **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
아.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지정된 시간(시험시작 20분 이후 ~ 시험종료 10분 전)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·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소지품 검사, 대기시간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.

자.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, 과도한 향수 사용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차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-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카.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타.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- 라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, 문제 누락·과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마.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-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사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■■■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제5호, 제7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-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제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다.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(기재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

가. 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정답가안 공개 : 2026. 4. 4.(토) 13:30

–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 : 2026. 4. 4.(토) 18:00 ~ 4. 7.(화) 18:00

※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gongmuwon.gosi.kr) 로그인 > 시험문제/정답 > 정답 이의제기

– 최종정답 공개 : 2026. 4. 13.(월) 18:00

5. 가산점 등록 및 필기시험 점수 공개 등 안내

[가산점 등록 및 결과 공개 안내]

가. **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**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6. 4. 3.)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**3일** 이내에 **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gongmuwon.gosi.kr)** 내 “**원서접수→가산점등록/확인**” 메뉴화면에 접속하여 **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.**

※ 등록 기간 : 2026. 4. 4.(토) 13:30 ~ 4. 6.(월) 21:00까지

나. **취업지원(국가보훈부) 가산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가산점**은 “**가산점등록/확인**”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후, 등록이 가능합니다.

(단,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에 한하여 실시간 조회에 실패한 경우, 본인의 **자격증 사본파일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제출*하여야 합니다.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점 미적용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)

* (**자격증 실시간조회 실패시 증빙서류 제출방법**) 정부24(www.gov.kr) '국가기술자격증발급' 메뉴에서 큐넷(www.q-net.or.kr) 자격증발급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여 '**자격증발급 신청**' 메뉴에서 **상장형 자격증**을 발급받아 **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'가산점등록/확인' 메뉴에 제출** ※ 자세한 사항은 **[참고 확인]**

다. **그 외 의사상자 및 기타 자격증 가산점**의 경우에는 등록 기간 내에 가산점 정보를 입력하면,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.

라. 가산점의 허위기재 및 잘못된 입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마. **가산점 등록/확인 결과**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성적 사전공개/이의제기에서 **2026. 4. 20.(월) 09:00 ~ 4. 21.(화) 21:00까지** 공개됩니다.
- 바.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그동안 법령 개정으로 자격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자격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 사이트: 큐넷(www.q-net.or.kr/☎1644-8000)
- 사. **취업지원대상자** 여부와 가점비율은 **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(지)청 보훈과로, 의사상자 등**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 여부와 가점비율은 **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**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 (2026. 4. 3.)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※ 취업지원대상자 :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☎ 1577-0606
정부24(www.gov.kr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
- ※ 의사상사 등 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☎ 044-202-3255
- ※ **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는 동일하지 않으니**, 사전에 본인의 가점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시험과목(5과목)중 한 과목이라도 **과락**(40점 미만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*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**

[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]

- 가.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: **2026. 4. 20.(월) 09:00 ~ 4. 21.(화) 21:00**
- 나. 이의제기 결과확인 기간 : **2026. 4. 23.(목) 09:00 ~ 21:00**
- ※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gongmuwon.gosi.kr)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응시현황 > 성적사전공개/이의제기

6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- 가.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gongmuwon.gosi.kr)에 게시합니다.
- 합격자 발표일 : **2026. 5. 8.(금)**
- 나.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(국민비서(구빠), 문자메시지)를 신청한 응시자 중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자가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통신사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♣ 채용 헬프데스크(시험장, 응시번호 등 문의) ☎ 1800-6634

[참고] 국가기술자격증 실시간 조회 실패 시 증빙서류 제출방법(예시)

1. 국가기술자격증 실시간 조회 결과 확인: 조회 실패(자격증 사본 첨부 필요)

가산점 등록/확인

○ 조회 결과
(실시간 조회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의 "저장"버튼을 반드시 눌러 등록 완료)

○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자격증

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**가산 자격증**

가산점 신청내역

자격증 일반기계기사(5%)

등록번호 12345678

조회 결과 **조회실패 (자격증 사본 첨부 필요, 마첨부 시 제출 불가)**

파일첨부

이곳을 클릭하면 파일을 업로드하세요

최대 1개 40MB 제한

[첨부파일은 1MB 이하만 허용됨. 파일은 업로드하여 1개 파일로 제출]

< 돌아가기 **저장**

2. 정부24 '국가기술자격증발급' → 큐넷 자격증발급 신청 사이트: 상장형 자격증 발급

정부24

민원서비스 > 혜택알리미 > 생활 > 정책정보 > 고객센터

국가기술자격증발급

정부24 AI

국가기술자격증발급(신규)

서비스 개요

일자리 및 직장 > 자격증 및 취업능력개발

신청 방법 방문, 우편, 인터넷

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

서비스 내용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처리기간 총 15일
처리기간 계산 방법

신청서 신청서 없음

수수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6조제 1항 규정기타별 특정 수수료

사이트가기

자격을·확인서

자격증발급안내

자격증발급

- [자격증발급 신청](#)
- [자격증발급 신청내역조회](#)

확인서발급

자격취득/미발급조회

자격증/확인서진위확인

자격을/확인서 > 자격증발급 > 자격증발급 신청

자격증발급신청

수첩형·상장형 자격증 발급

상장형 자격증

본 사이트에서 합격자 발표일 이후 자격취득자가 인증과정을 거친 후 즉시 출력하여 발급

바로가기

국가기술자격증

3. 자격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: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'가산점등록/확인'에 제출

가산점 등록/확인

○ 조회 결과

(실시간 조회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의 "저장"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등록 완료)

○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자격증

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자격증

가산점 신청내역

자격증	일반기계기사(5%)
등록번호	12345678
조회 결과	조회실패 (자격증 사본 첨부 필요, 미첨부 시 제출 불가)

파일첨부

파일 이름	파일 크기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기계기사_20	1.59 KB

최대 1 개 10 MB 제한 1 개, 1.59 KB 추가됨

(첨부파일은 1MB 이하만 허용됨. 파일은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)

4. 증빙서류(자격증 사본) 제출완료 확인: 자격증 사본파일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

가산점 등록/확인

○ 조회 결과
(실시간 조회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의 "저장"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등록 완료)

○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자격증

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자격증

가산점 신청내역

자격증	일반기계기사(5%)
등록번호	12345678
조회 결과	조회실패 (증빙서류 제출완료)

파일첨부

파일 이름	파일 크기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기계기사_20	1.59 KB

최대 1 개 10 MB 제한 1 개, 1.59 KB 추가됨

(첨부파일은 1MB 이하만 허용됨. 파일은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)